

## 화장품 관리자 법정 의무교육 이수 안내문

- 화장품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미 해당자와 '23년 교육을 이미 수료하신 분은 해당 사항 없는 내용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.

◆ [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]는 화장품법 제5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**최초 및 보수교육**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**교육실시기관에서 연 1회 이수**하여야 하며, **미이수 시** 화장품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[별표2] 개별기준 목록에 따라 **과태료(50만원)가 부과**됩니다.

◆ **교육 방법** : 온라인 가능, 책임판매관리자(6시간),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(4시간)  
- 실시간 비대면 · **온라인 동영상** · 집합 방식으로 이수 가능하며, **교육 이수에는 통상적으로 하루가 소요**됩니다. 기타 교육 이수 여부 확인 및 교육 일정 관련 사항은 아래 교육기관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
\* **교육기관** : 대한화장품협회(02-785-7984, 02-2135-5771),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(02-2162-8058),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(031-831-5527, 5663, 031-8055-8753)

\* **(폐업/휴업 관련 안내)** 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 의무는 실제 영업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**영업이 등록된 상태만으로 발생**하므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

다만, 휴업한 업체의 관리자는 **휴업 기간이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전체 기간(1.1~12.31)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년도에 교육을 받지 않아도** 되며,

폐업한 업체의 관리자는 폐업 시기와 관계없이 **폐업한 해에는 해당년도에 교육을 받지 않아도** 됩니다.